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세 및 무역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관세평가분류원장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3 연구 주제

☐ [권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관세평가 부문(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5 참조)

1. 전자상거래(E-Commerce) 물품의 관세평가

- 수출국 내국세 및 플랫폼 제공 할인의 실제지급가격 포함여부, 구매대행업자와 배송대행업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

2.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기기(기계장비, 스마트 기기, 냉장고 등)의 운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유형별 (iOS, Android 등과 같은 운영체제, 기능 향상을 위한 Application, 마케팅 목적의 전자적 상표 프로그래밍 등) 관세평가 사례 분석 및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호의 생산지원요소 판단 및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를 중심으로 -
3. TradeMark Collaboration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연구
 - 스포츠용품에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가 부착되거나 스마트기기에 전자적 또는 물리적으로 명품 상표가 구현되는 경우 등 원래 수입물품의 상표 외 부수적 상표가 부착되어 물품이 수입될때 부수적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 여부 -
4. 특수관계자간 CPM(Cost Plus Method)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영향 판단 검증방법 및 관세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적정 '수출국 생산자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방법 연구

- **품목분류 부문**(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작성)

1. Processor 유형*에 따른 Processor 내장형 제품의 HS 품목분류 쟁점 분석

* (예시)

유형	프로세서
범용 프로세서	CPU, GPU, MCU
특수목적 프로세서	DSP, NPU, TPU, VPU, RPU
사용자 정의/ 하드웨어 가속기	ASIC, FPGA
시스템 관리용	PCU, SMU

※ 유형 분류는 연구자의 재량으로, 반드시 예시를 따를 필요는 없음

2. Processor 작동에 필요한 신호 입력·전달 기기에 대한 HS 품목분류 쟁점 연구
3. 화합물의 결합방식(공유결합, 이온결합, 배위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바스 등)에 따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쟁점사례 연구
4.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
5. 통신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 및 향후 발전 방향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 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논문형식 및 분량

☐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 별첨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및 별첨 7)하되, **자유 형식 가능**

※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논문 후단에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5.5.2.(금) - 6.30.(월)**

※ 참가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김기영 주무관

 042-714-7503 / 0kim@korea.kr

○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정의석 주무관

 042-714-7531 / jes118@korea.kr

6

논문 제출

- ☐ 제출 기한 : 공고일부터 **10.31.(금)** 까지
-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7

검증 및 심사

- ☐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 ☐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 시 평가점수 10% 범위 내,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 평가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 (감점) 논문 분량 50매 초과 시 5% 범위 내 적용 가능

8

시상

- ☐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장 려 상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 발표 : **2025.12월**,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 지연 등 변경 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9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연구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연구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

[별첨 1]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 대표자

■ 성명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교수		
■ 부문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 연락처	010-1234-5673	■ 이메일	000000@ customs.go.kr
■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mmm아파트 000동 0000동				
■ 논문주제	수입 후 가격 변경에 대한 합리적 관세평가 처리 방안				
■ 연구방안	연구개요 작성				

☐ 팀원

■ 성명①	김길동	■ 소속	관세컨설팅(주)	■ 직위	컨설팅본부장
■ 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성명②	박길동	■ 소속	관세법인 대전	■ 직위	관세사
■ 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별첨 2]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별첨 3]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논문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5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별첨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참가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를 상기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 항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공, 주소	공모전 운영	<u>1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	--------------------------

☐ 제3자 제공 항목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 기간
우수작책자 인쇄업체	성명, 소속	<u>책자 발간</u>	<u>3개월</u>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관세평가 연구논문 권고주제 세부내용

주제 1	전자상거래(E-Commerce) 물품의 관세평가 - 수출국 내국세 및 플랫폼 제공 할인의 실제지급가격 포함여부, 구매 대행업자와 배송대행업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
【연구배경】 ○ 오늘날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무역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음 ○ 특히 수출국 내국세의 환급신청 증가, 플랫폼 사업자 및 배송대행업자의 역할 다양화, 전자상거래 형태 다변화 등으로 인해 아래의 연구쟁점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관세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연구쟁점】 ○ 환급 가능성이 있는 수출국 부가가치세의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소비세로, 수출국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은 물품의 수출판매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음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목적의 가격은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서 해당 수입 상품에 대하여서는 면제되어 왔거나 또는 환급에 의하여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예정인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 및 수출국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를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수출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수입 시점에 수출국 부가세에 대한 환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환급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 등) 해당 부가세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지급하는 포인트 또는 할인의 실제지급 가격 포함 여부

- 전자상거래 기반의 해외직구는 소비자와 해외판매자 간 직접 거래보다는 플랫폼을 경유한 간접구매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구매·통관을 일괄 처리하는 구매대행형 구조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자체 포인트, 쿠폰, 제휴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 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는 할인 적용 후 금액을 최종 결제금액으로 인식하는데, 관세평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할인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할인 적용 방식과 지급 주체가 복잡한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는 실거래가격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할인수단이 관세평가상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실무적 기준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의 역할 및 성격에 대한 논의

-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수입거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구매대행은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관세평가 측면에서는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입자 판단, 거래가격 인정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함
- 국내 소비자가 실질적인 물품의 구매자로서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 존재하고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단순히 물품 구매 및 수입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된 대금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겠으나,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판매자’로서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를 새로운 수입거래로 간주하고 해당 거래에서 지급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플랫폼의 역할을 구매를 위한 ‘대리인’과 수입물품의 ‘판매자’ 중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배송대행업자)** 해외 판매자가 물품을 국내까지 배송하지 않을 경우 배송지를 수출국의 배송대행지로 지정한 후 배송대행업체가 해당 물품을 수령하고 국내로 배송하는 거래도 빈번히 이루어 지는데, 형식적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평가상 배송대행업자의 역할을 구매대행업자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 배송대행업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을 대행할 뿐 상품의 구매·결제·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물류대행**’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배송대행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결제를 대행하거나, 상품 하자·반품·교환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물품을 대량구매 후 다수의 소비자에게 나누어 보내는 경우 등은 ‘**구매대행**’으로 간주 될 소지가 있어 거래 상황에 따라 배송대행업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연구방향】

- 전자상거래 특성 및 유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식
- 수출국 부가세의 환급 가능성과 실제지급가격의 관계 연구
-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등 각 거래 단계별 상이한 주체가 제공하는 각종 포인트 혹은 할인쿠폰 및 각종 수수료 등의 합리적 처리 방안
 - 국내외 판례 및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한 할인혜택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판단 기준안 제시
- 플랫폼 사업자 등 여러 당사자가 개입하는 전자상거래 형태의 유형과 수출 판매 당사자 결정 기준
- 전자상거래에서 구매대행업자와 배송대행업자의 역할과 그에 따른 관세 평가시 적용 방안

주제 2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기기(기계장비, 스마트기기, 냉장고 등의 운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유형별(iOS, Android 등과 같은 운영체제, 기능 향상을 위한 Application, 마케팅 목적의 전자적 상표 프로그래밍 등) 관세평가 사례 분석 및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호의 생산지원요소 판단 및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를 중심으로 -
【연구배경】 ○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는 생산지원 요소가 ‘goods and services’로 표현되어 있고, 이를 우리나라 관세법으로 수용하면서 ‘goods’는 물품으로, ‘services’는 용역이라는 용어로 입법함 - 또한 이때의 물품은 ‘유체물’과 ‘무체물’로 구분하면서 ‘goods’는 유체물, ‘services’는 무체물로 최우선적 분류기준으로 적용하여 생산지원의 구분의 핵심용어인 ‘결합되는’, ‘사용되는’, ‘소비되는’, ‘필요한’의 역할을 유체물과 무체물의 구분에 따라 부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함 ○ 최근 관세평가에서 생산지원과 관련하여, 국내 개발하여 무상 제공한 소프트웨어가 생산지원요소 4가지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 협정 상에는 위 설명과 같이 결합되는(incorporated), 사용되는(used), 소비되는(consumed), 필요한(necessary)과 같이 수입물품(imported goods)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되어 제시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 세계관세기구(WCO) 중/고급용 관세평가 교육모듈에는 제1호의 생산지원을 수입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physically incorporated)되는 유형의 물품/품목(tangible goods/items)로 설명하며 제4호의 생산지원을 무형의 품목(intangible item)으로 언급함(국제상업회의소(ICC) GATT 관세평가규정 해설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술함) - 한편 EU의 소프트웨어 관세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구매자가 무료로 판매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판매자가 이를 수입물품에 결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산정시 해당 소	

프트웨어의 가치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합되는’ 또는 ‘사용되는’으로 판단하여 가산 신고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결정한 EU 대법원의 사례(ECJ Case C-306-04 2006.11.16., ECJ Case C-509/19 2020.9.10.) 및 EU 관세법위원회 및 관세전문가그룹(평가부) 결정(Conclusions No. 26, 28)이 있으며, 제4호의 ‘필요한’으로 판단하여 국내 개발된 용역으로서 가산하지 않는 결정(미국 HQ 545256 1995.1.10., HQ 545987 1995.8.28., 일본 오사카세관 결정 2020.3.24.)도 있음

- 위 사례 중 관세법위원회 및 관세전문가그룹(평가부) 결정(Conclusions No. 26)에서는 “수입물품을 구동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설치되는 무형의 구성요소들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무형의 구성요소들은 최종 물품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는 최종 물품에 연결되거나 일부가 되며, 최종 물품을 작동할 수 있게 하거나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 무형의 요소는 새로운 기능적 특성을 추가하여 수입물품의 가치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무형의 생산지원은 UCC 제71조(1)(b)(i)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형의 생산지원(예 : 소프트웨어/기술)이 있다 다른말로 그것들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생산 노하우 또는 디자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무형의 생산지원은 UCC 제71조(1)(b)(iv)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EU의 판단은 소프트웨어라도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필요한’으로 보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수입물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가치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이를 수입물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 보아 ‘결합되는’으로 판단함
- 이러한 수입물품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가 수입물품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수입물품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혹은 단순 기능을 추가하는지에 대한 기능 또는 유형별(OS, Android 등과 같은 운영체제, 기능향상을 위한 Application 등)로 생산지원의 해당 여부 및 어느 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 생산지원 요소의 합리적인 판단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한편, WCO 권고의견 4.8, 4.13 및 사례연구 8.1, 8.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생산지원비용과 권리사용료 간 검토의 우선 순위 및 상호 배척(하나의 가산요소 검토가 다른 가산요소 검토를 배제하는지)여부에 대한 설명에 따라 가산되는 생산지원 여부 또는 권리사용료 지급은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바,
 - 생산지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가 수입물품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수입물품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혹은 단순 기능을 추가하는지에 대한 기능 또는 유형별(OS, Android 등과 같은 운영체제, 기능향상을 위한 Application 등)로 권리사용료 가산의 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에 대한 검토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연구방향】

- 협정 및 관세법 상 규정된 결합되는(incorporated), 사용되는(used), 소비되는(consumed), 필요한(necessary)에 있어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례 수집 및 구성요소 해당 사유 분석
- 수입물품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입물품 구성의 필수적 요소인지 여부가 ‘결합되는’이라는 제1호의 생산지원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 생산지원 요소 중 제4호의 ‘생산에 필요한(necessary for product)’의 개념적 정의 분석 및 사례 수집
- 현 4가지 생산지원 요소와 관련하여 ‘유체물’과 ‘무체물’이 현재와 같이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4호의 기계적 구분이 아닌 문리적, 기능적, 융합적 구분 등을 통해 제1호 내지 제4호를 관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혹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독립적 구성요소로서 현 4가지 생산지원 요소의 범위 내에서 별도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 위 수집된 사례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권리사용료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지 여부
- 위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상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침 또는 입법적 해결 방안

주제 3	TradeMark Collaboration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연구 - 스포츠용품에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가 부착되거나 스마트기기에 전자적 또는 물리적으로 명품 상표가 구현되는 경우 등 원래 수입물품의 상표 외 부수적 상표가 부착되어 물품이 수입될때 부수적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 여부 -
------	--

【연구배경】

- 상표(TradeMark)는 본질적으로 상품을 타 상품과 구별하고 식별하는 것으로 출처표시, 품질보증, 마케팅, 자산 등과 같이 여러 기능을 가짐

출처표시 (Source Identifier)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소비자에게 안내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상품의 품질에 대한 기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
마케팅 (Advertising & symbolic)	상표는 마케팅의 핵심 수단, 연관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자산화 (Asset)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평가

- 일반적으로 물품에 부착되는 상표는 단일한 상표이나 하나의 물품에 본질적 브랜드(Primary TradeMark)와 부수적 브랜드(Secondary TradeMark)가 협업(Collaboration)하여 부착된 경우(예를 들어 특정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에 타 스포츠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등)에 있어 국내 구매자가 부수적 브랜드의 권리권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관세평가 상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식별 기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기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이라도 상표가 알려져 있는 경우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으며, 기존 시장에서의 소비자 점유율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 인식, 브랜드 충성도, 연상 이미지 등으로 구성된 브랜드 자산은 상표를 통해 실현되므로 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가치평가에 크게 작용함
- 하지만, 부수적 브랜드는 본래 상품의 본질적 품질과 특성을 나타내지 않

으며, 주로 마케팅 또는 광고적 목적을 위해 부착된 상표이고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관심 유발 및 상품의 부가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연구쟁점】

- 부수적 브랜드 권리사용료 가산의 법리적 분석(관세법 시행령 제19조)
 - (관련성)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식별, 품질보증, 자산 등의 기능이 아닌 단순히 마케팅 혹은 광고 목적의 부수적 브랜드(Secondary TradeMark)의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부수적 브랜드는 수입물품에 부착되기는 하나 해당 물품과는 다른 특성 또는 품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수입물품 자체에 대한 기여가 아닌 수입국 내 판촉활동과 같은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부착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가치를 수입물품 자체의 가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 (거래조건성) 기존 물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조건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 브랜드 상표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관세평가상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 복수의 권리사용료 계약과 물품 공급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른 거래조건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가령 서로 독립된 권리권자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판매 물품에 복수의 상표를 부착하는 TradeMark Collaboration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질적 브랜드의 상표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판매자)가 독립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복수의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례상 개념인 ‘구매선택권’을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 브랜드의 권리권자와 생산자(판매자) 간의 관계를 부수적 브랜드의 권리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연구방향】

- TradeMark Collaboration 계약의 실제 사례 및 각 거래 상황 수집
- WTO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 상 규정된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인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연구
- 복수의 상표사용 권리계약이 개입되는 경우 해당 복수의 권리권자와 구매자와 생산자(판매자) 간 관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거래조건 판단의 기준에 대한 연구

주제 4	특수관계자간 CPM(Cost Plus Method)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영향 판단 검증방법 및 관세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적정 ‘수출국 생산자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방법 연구
------	---

【연구배경】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 원가가산법(CPM, Cost Plus Method)은 국제 거래에서 한쪽 당사자가 제조·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원가에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가산법으로 결정된 수입물품 이전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원가와 원가기준 통상의 이익률에 대한 적정성이 검증되어야 함
 - 국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원가기준 통상의 이익률을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통상의 이익률은 동일한 공급자가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실현하는 원가가산 이익률 또는 독립된 기업이 비교가능한 거래에서 실현하는 원가가산 이익률을 참조하여 산정되므로 비교가능 이익률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2.47~2.52)은 원가가산법이 비교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한 원가기준을 기초로 가산이익(mark-up)이 결정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자와 비교 가능한 제3자인 당사자들의 기능 및 위험 부담과 관련된 비용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비교가능성 확보의 중요한 측면으로 회계상의 일관성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수입 당사자는 비교 업체의 원가기준 또는 회계기준 등 비교가능성 충족을 위한 요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과세 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임

- 한편, 원가가산법과 유사한 구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는 산정가격 방식이 있으며, 두 방식은 모두 ‘원가 + 이윤’의 구조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적용 목적, 법적 근거, 산정 항목의 정의 및 검증 절차 등에서의 차이가 있음

	원가기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개념	CPM 방식으로 가격 결정 시 수출자의 적정 이윤	산정가격으로 가격 결정 시 수출자의 적정 이윤 및 경비
목적	독립 기업간 거래와 유사한 수준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산출	거래가격 불인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법적 근거	「국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 「관세법」 제34조
검증	수출자의 기능과 위험을 고려한 비교가능 기업의 원가 대비 이익률	동종·동류 물품 수출 판매 시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준

- 이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이전가격에 포함된 원가기준 가산이익의 통상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특수관계 영향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전무함
- 한편, WTO 평가협정 제6.1조(b)에서는 산정가격(Computed valu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합산하는 금액으로 수출국의 생산자가 평가대상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인 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6조에 대한 주해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생산자의 수치가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수치와 불일치하지 않는 한, 생산자에 의하여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를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협정 제6조 또는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의 ‘수출국 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는 기준 또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고 법 제34조를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없기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국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연구방향】

- 협정 제6조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협정 제5조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주제에서 원가 기준 가산이익(Mark-up)의 특수관계 영향 판단 검증 방법을 관세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수출국 내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 원가가산법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관세법상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개념 비교와 분석을 통한 적정 이익률 검증 방안 연구
- 적정 이익률 검증을 위한 비교가능 자료 부족 시의 대안적인 검증 방법을 판례(조세심판원 결정 또는 법원 판례 등)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연구

연구논문 작성 요령 (참조용)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 2) 목차는 I,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 분	전개번호	크기	구 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I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 식	12	(1)
본문 내용	12		소 속	10	
성 명	12		각 주	10	1)
요 약	12	<요 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	진한선	내 부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	이중 실선

-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 : (Evans 1979, 56)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XX일보 93/04/08, 5)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XXX연구원 1992)

III.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 홍길동. 1996. “한국의통상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 : 홍길동. 1996. “한국의통일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 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 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 (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인 경우는 꺾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 1) 저자 1 인인 경우

예 :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 믿음사. 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 XX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 :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 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 개벽사

[별첨 7]

논문 작성 예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

A Study on Customs Valuation Treatment of
Compensating Adjustments in Transfer Pric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연구자 >

이시영(李時榮, Siyeong Lee)

삼일회계법인, 관세사

※ 해당 예시는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논문을 일부 발췌함

목 차

I. 서론	4
1. 연구 배경 및 목적	4
2. 연구 방법	5
II.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7
1. 사후보상조정의 개념	7
2. 대응조정과의 차이	8
3. TP 사후보상조정의 처리방안 문제	10
1) 세제 간 마찰	10
2) 판단 기준 마련 필요성	10
III. WCO 가이드 및 관세법 분석	13
1. WCO 가이드 주요내용	13
2.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법 규정	15
3. 실무적 한계	16
IV. TP 사후보상조정 관련 국내 사례 분석	20
1. 심판례 분석	20
2. 법원 판례 분석	22
1) TP 사후보상조정 영수	22
2) TP 사후보상조정 지급	24
3. 관세청 처리 지침 분석	28
4. 시사점	29
V. 해외 주요 사례 분석	31
1. 미국	31
2. 유럽	33
3. 캐나다	34
4. 일본	35
5. 호주	36
VI. 개선방안	39
1. 제도적 한계 인식	39
2. 처리방안의 법제화 제언	39
VII. 결론	45
참고문헌	46
논문요약(※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 필수 작성·제출)	49
부록 : LLMs A.I. 활용 내역	49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과 이에 따른 관세평가 문제는 국제 무역의 복잡성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다. 글로벌화를 통해 가속화된 다국적 기업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자회사를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전가격 제도를 활용한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 내의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가격을 말하며, 이는 각국의 과세당국이 적절한 과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소득과 비용의 국제적 배분을 통한 세후 소득의 극대화(maximization for income after tax)'라는 그룹 전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그들의 '이전가격'은 각국의 내국세 당국뿐만 아니라 관세 당국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종종 시장 상황이나 기업 전략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은 사후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으로 나타나며, 이는 초기 거래 이후 발생한 재무적 변동에 따라 거래 가격을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후보상조정은 국제 거래의 복잡성을 더욱 증대시키며, 특히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중략>

1.2. 연구 방법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의 세무 당국과 관세 당국으로부터 상이한 요구를 받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두 세제 간의 마찰은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사후보상조정을 각 세제상 관점에서 어떠한 성격인지 정의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세무 및 관세 당국 간의 협력 부족과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승열 외(2015)는 관세청 민원회신 및 심판례 등 과세당국의 입장을 분석하며 실제지급금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후귀속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손익조정 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상태 외(2016)는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련 가격조정약관과 그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사후보상조정 처리 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관세 당국 측면에서는 상향 조정의 경우 가격조정약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또는 일부의 과세를 검토하나 수입물품과 관련된 실제지급금액과 단순 손익조정 금액은 구분하도록 하고, 하향 조정 시에는 가격조정약관 충족 시에 한해 환급을 하도록 하며, 납세의무자 측면에서는 수입 전 이전가격 정책을 명문화

하고 사후보상조정 금액에 대한 상세 근거 등을 구비하고 상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민규 외(2018)는 사후보상조정 금액은 국내 영업활동 이후 조정된다는 점을 들어 실제지급가격의 시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사후귀속이익과는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하며 상향 조정의 경우 자료 검토 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다면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하고 자료가 부재한 경우 제1방법을 배제하고 하향 조정의 경우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창민(2024)은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우리나라 처리방안과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당 조정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하며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시각을 설명하며 개선방안으로 사후보상조정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고 가격조정약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실제지급금액인지 또는 사후귀속이익인지에 대한 분석 대신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개념과 대응조정과의 차이 그리고 WCO 가이드와 우리나라 관세법 규정의 분석을 통해 그 실무적 한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 심판례, 판례 및 관세청 처리 지침을 통해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각각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후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략>

2.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2.1. 사후보상조정의 개념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¹⁾을 말하며, 이전가격세제는 소득과세 목적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 사이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는 경우 정상가격에 부합하도록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²⁾. 즉, 이전가격세제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등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적용되어 국제거래상 조세 회피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을 부인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6호. “이전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의 특수관계인(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해외의 다른 지점을 포함한다)와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그 밖에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2) 박설아, 박훈. (2016).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3(1), 271-299.

이전가격은 일반적으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에 따라 독립기업원칙에 기초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이전가격이 위치하도록 설정하게 된다. 정상가격은 다시 특수관계거래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과 각 특수관계거래 참여 법인의 경제적 특성, 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장단점, 이전가격 분석 시 확보 가능한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관련 가격 및 이익률 자료의 확보 수준,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 간 거래 사이에 비교 가능성 차이 존재 시 합리적 차이 조정 가능 여부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거래에 가장 부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다.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다시 해당 범위 내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 중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이하 “TP 사후보상조정”)이란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목표이익률을 사전에 약정한 후 사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실제 달성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는 경우 약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 조정을 실시하게 되며, 목표이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본사에 조정금액을 지급하고 미달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조정금액을 영수하게 되는데 이를 TP 사후보상조정이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사업연도 동안 전체 거래에서 실현된 이익률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된 이익률 범위를 비교하여 전체 거래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이 정상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다³⁾.

2.2. 대응조정과의 차이

TP 사후보상조정은 내국세 목적의 대응조정과는 차이가 존재하며 대응조정이란 어느 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과세조정(일차조정)에 대하여 상호합의 절차 등을 거쳐 상대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⁴⁾. 즉,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거래가격을 재조정(주로 증액)하는데 이를 일차조정이라 하며, 일차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 이동이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차조정⁵⁾을 수행하게 되고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공평한

3) 박설아, 박훈. (2016).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3(1), 271-299.

4)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4.32.

A corresponding adjustment ... can mitigate or eliminate double taxation in cases where one tax administration increases a company's taxable profits (i.e. makes a primary adjustmen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ransactions ... The corresponding adjustment in such a case is a downward adjustment ... so that the allocation of profits between the two jurisdictions is consistent with the primary adjustment and no double taxation occurs.

과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 국가의 과세당국이 이를 반영하여 조정(주로 감액)하는 것이 대응조정으로 보상조정과 그 효과는 동일하나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상가격 범위 내로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사후보상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략>

7. 결론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정이 관세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수입 이후 시장 상황이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후보상조정의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는 내국세 관점과 달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 관세평가와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명확한 처리방안이 부재하고 심판례 및 판례 등에서도 일관된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평가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이를 위해 WCO 가이드와 국내 관세법 분석 및 국내 심판례 등 사례와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 국제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정책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TP 사후보상조정의 실질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후보상조정을 바라보는 시각 변경과 현행 특수관계자 간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ACVA 및 APA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의 확대 및 확정신고 시 요건 구비 규정을 제시하여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전반적인 조세 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이차조정의 경우 수행하지 아니하는 국가도 존재함.

참고문헌

1. 한국 문헌

관세청. 2020. 「신청인용 ACVA 가이드」

관세청. 2024. 「2023 ACVA 연차보고서」

국세청. 2023. 「2022 APA 연차보고서」

국세청. 2012. 「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세금·법률가이드」

김영순. 2014.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소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관점에서-”. 법학논총, 31(1), 545-567.

김영순. 2015.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시 이전가격을 이용한 관세회피 사례분석 및 입증 책임에 있어서 시사점”. 서울법학, 23(1), 385-417.

노영훈. 2003. 「한국조세연구원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미국판례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문상태. (2008). “관세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의 이전가격세제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9(3), 173-195.

문상태·변문태·정진용. 2016. 이전가격조정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7(2), 23-48

양승종. 2013. “2012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조세학술논집, 29(2), 1-43.

이승열·안정우·김진우. 2015. ”다국적 기업의 사후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45-74

이창민. 2024. “「관세법」제30조에 따른 실제지급가격 결정 시 ‘수입 以後 가격의 변경’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1)“. 주간 관세무역정보, 2068,20-37.

이창민. 2024. “「관세법」제30조에 따른 실제지급가격 결정 시 ‘수입 以後 가격의 변경’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2)“. 주간 관세무역정보, 2069,29-44.

이창민. 2024.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관세평가 처리 방안 검토(1)“. 주간 관세무역정보, 2074,16-34.

이창민. 2024.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관세평가 처리 방안 검토(2)“. 주간 관세무역정보, 2075,16-32.

이창희. 2019.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인가“. 조세학술논집, 35(3), 37-89.

박설아·박훈. 2016.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3(1), 271-299.

정민규·정재완. 2018. “거래순이익율법(TNMM)에 의한 국제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과세에 대한 고찰”. 관세학회지, 19(4), 71-92.

정재호·구자은·유현영. 2011. “주요국의 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최천식. 2018.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전략에 대응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한국관세사회. 2016. 「계간 관세사 통권 제181호 2016 여름호」

함호진·전태영. 2017. “다국적기업의 정상가격 결정과 관련된 판례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6(1), 65-95.

2. 외국 문헌

Australian Border Force. 2023.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23/41」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2012. 「Practice Statement B_IND08」

Baker McKenzie. 2022. “Germany:

The Hamamatsu TP/customs valuation case comes to a surprising conclusion”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tax/germany-the-hamamatsu-tpcustoms-valuation-case-comes-to-a-surprising-conclusion> (검색일: 2024. 05. 30)

Japan Customs. 「関税定率法基本通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0. 「Reconciliation External Guidanc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0. 「Business Rules and Process Document」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요약)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과 이에 따른 관세평가 문제는 국제 무역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자회사를 운영하며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이전가격 제도를 활용하며 시장 상황이나 기업 전략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는데 이러한 조정은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으로 나타난다. 사후보상조정은 초기 거래 이후 거래가격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관세평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TP 사후보상조정의 주요한 문제는 내국세와 관세 목적의 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내국세 목적과 관세 목적의 TP 사후보상조정은 모두 정상거래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할 목적이지만 1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소득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세제와 달리 개별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TP 사후보상조정의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개별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결국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이 발생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법령과 실무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TP 사후보상조정의 명확하고 조화로운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5년 WCO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반된 과세관행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WCO 가이드」를 발간하면서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일관된 접근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s)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2017년 해당 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요건이 ACVA 1방법 인정 또는 APA 사전 승인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처리 기간 또한 다소 길다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은 심판례 및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일관되지 않고 실제지급금액, 사후귀속이익 또는 소득의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심판례에서 사후귀속이익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소득의 조정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관세청 처리지침 또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P 사후보상조정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해 수입 전 이전가격 결정 정책이 존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이든 영수든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한 현행 규정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먼저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TP 사후보상조정은 소득의 조정을 목표로 가격의 조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OECD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조정은 물품에 대해 지급 또는 영수한 가격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후 현재 ACVA에 따른 1방법 결정 또는 APA 사전 승인 및 기타 요건들과 별개로 판매계약 등을 통해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확정신고 시 조정 금액의 지급 또는 영수에 따라 과세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되, 지급의 경우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반면, 영수의 경우 조세 회피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환급을 운영하여 환급 신청 시 납세자로 하여금 이전가격 정책, 이전가격 연구자료, 조정 및 계산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서는 지급 시 기간이자 및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영수의 경우 확정신고 시 환급 요건과 동일하게 하되, 환급가산금만큼 공제하여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TP 사후보상조정의 실질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후보상조정을 바라보는 시각 변경과 현행 특수관계자 간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ACVA 및 APA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의 확대 및 확정신고 시 요건 구비 규정을 제시하여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전반적인 조세 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